

제주지방법원 2018. 12. 10 선고 2017가단61395 판결 [매매대금감액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10. 29.

판결 선고 2018. 12. 1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갑 1호증, 을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2017. 8. 1. 피고 소유의 별지

목록 기재 선박(이하 '이 사건 선박'이라 한다)을 매매대금 190,000,000원에 매수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17. 8. 2.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, 이후 이 사건 선박을 2017. 11. 14. 제3자에게 135,000,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.

2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자 피고의 부 C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은 연안복합자망허가를 받은 선박이므로 "체납기 허가"와 "자망 허가"를 모두 득한 배라고 설명하였고,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옆 부분에는 '연안복합자망'이라는 표기와 함께 야간 낚시를 위한 외부 조명 등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체납기 허가까지 득한 선박으로 믿었다. 그러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발급받아 보고 나서 그물 작업만 할 수 있는 자망 허가만 받은 선박임을 알게 되었다. 피고는 마치 체납기 허가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있거나 또는 자망 허가만 있는 선박을 인도함으로써 불완전이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로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인 55,000,000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선박의 옆면에 '연안복합자망'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을 2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,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의 부 C 사이에 누구도 어업허가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, ② 원고가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, C은 이 사건 계약 다음날 원고에게 "연안자망허가"라고 기재된 어업허가증을 교부한 점, ③ 수협의 직원들은 원고에게 대출을 해줄 당시 "어업허가증의 종류에 따라 대출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대출과정에서 원고에게 어업허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한 점, ④ 이 사건 선박 옆면에 '연안복합자망'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기 전의 소유자가 전라도 지역에서 연안복합자망 허가를 득하여 조선소에서 건조시부터 '연안복합자망'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부 C이나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어업허가에 관하여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, 또한 이 사건 선박이 연안복합자망

허가가 있는 선박의 매매라는 점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불완전이행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임대호

별지